

2018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

○ 일시 : 2018년 4월 1일(목요일) 14:00 ~ 15:40

○ 장소 : 대학본부 8층 회의실

○ 회순

1. 개회 2. 국민의례 3. 위원장 선출 4. 위원장 개회 선언 5. 안건상정 6. 폐회

○ 참석자 : 고동호, 박주미, 이철로, 이동호, 김학용, 손재권, 한길석, 한상욱, 조호성, 장환석, 박미순, 박진, 조춘신 위원

○ 불참자 : 김재민, 김새봄 위원

○ 상정안건

- 위원장 선출

- 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

간사 :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.

(권진철)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.

(국민의례를 마친 후)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오늘 회의 안건은 2018회계연도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입니다.

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임시위원장은 정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로 종전에는 당연직 위원 중 부총장께서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셨습니다.

위원 : 교무처장님을 추천합니다.

(손재권)

위원 : 한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.

(한상욱)

간사 : 일반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은 맡으

(권진철) 셔야 하므로 교무처장님이 하시는 것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?

위원들 : (전원) 동의합니다.

간사 :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어서 교무처장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고, 임

(권진철) 시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임시위원장 : 인사말씀

(고동호)

임시위원장 : 회의 진행에 앞서 신규 위원인 한길석 교수님은 발전지원재단의 추천을 받

(고동호) 았으며 전 고규진 위원의 후임자이며, 조호송 교수님은 교수회의 추천을 받 았으며 전 반상진 위원의 후임자입니다.

신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.

위원 :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

(한길석)

위 원 :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

(조호성)

임시위원장 :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13명이 참석하여 「국립대학의 (고동호)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임시위원장 :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(재정위원회의 설치·운영) (고동호) 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겠습니다. 동 법률에 의거 재정위원장은 일반직 위원 중에서 호선함에 일반직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원 : 한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.

(손재권)

임시위원장 : 한길석 위원님 추천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?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위원 (고동호) 님들의 추천과 재청으로 한길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원들 : 재청합니다.

임시위원장 :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고 한길석 위원님의 추천과 재청으로 한길석 위원

(고동호) 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임시위원장 : 위원장님의 수락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

(고동호)

위원장 : 인사말씀

7/19 11:11

(한길석)

위원장 : 의사일정에 따라 「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」을 상정

(한길석) 하겠습니다. (의사봉3타)

제안 설명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

재정기획부본부장 :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「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」에 (최용재) 대하여 설명함.

위원장 : 제안 설명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.

(한길석) 본 안건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원 :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, 회의 전에 교수회와 논의하여 많은 조율을 한 것에 대해서

(한상욱) 감사를 드립니다.

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 주요 변경사항 수정 1페이지를 보면 퇴직교수의 경우 8월에 8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.

다른 일반 교수들과 같이 월별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?

재정기획부본부장 : 선급금을 지급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나 퇴직 예정이신 교수님들이 결과보고서를 (최용재) 내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퇴직 예정이신 교수님들

의 지급방법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8월에 전액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.

위 원 : 알겠습니다.

(한상욱)

위 원 :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.

(한상욱) 학술연구트랙에서 선급금은 5월, 8월, 10월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기성금은 익년 2월에 약 1,000만원을 일괄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유독 학술연구트랙만 따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학술연구트랙의 선급금도 8월에서 10월까지 매달 약 170만원씩 월별로 지급하고, 기성금도 1월, 2월에 나누어서 약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?

재정기획부본부장: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

(최용재)

위 원 :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매달 약 2백만원씩 받습니다. 그러나 학술연구트랙을 선택

(한상욱) 한 경우 3개월에 나누어서 받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점이 교수님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첫 해에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. 따라서 170만원이라도 나누어서 봉급성으로 드리는 것이 그 분들이 가계를 계획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

재정기획부본부장: 잘 알겠습니다.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

(최용재)

위 원 :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과금은 정년퇴임하신 분들도 연말에 일괄로 지급하게 됩니다.

(고동호) 정년퇴임한 일반 교수님들과 같이 계산을 해서 똑같은 시기에 지급할 수 있으면 행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성과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퇴직 후에도 퇴직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

위원장 : 다른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

(한길석)

위 원 : 무기계약직 45명, 수입대체직원 50명, 미화업무하시는 분까지 하면 200명 정도

(박미순) 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. 이 분들을 직원으로 생각하여 반영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.

재정기획부본부장: 신규 대학회계직으로 발령나신 분들은 노사협약에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지

(최용재) 급대상에서 제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현재 기획과에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나,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하고 총무과, 재무과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올 해에는 예산이 확정되어 반영되기 어려우며,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.

위 원 : 당연히 이 분들도 직원이므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(박미순)

위원장 : 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검토가

(한길석) 필요한 지에 대해 제안자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재정기획부본부장: 시기상으로 검토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올 해 예산을 교육부와 협의가 끝나서	
(최용재)	확정 통보를 곧 받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신규 대학회계직 전환하신 분들은 노사 협약서에 교연비는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.
위 원 :	작년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 분들은 올 해 준다고 협약을 했습니다.
(박미순)	
위원장 :	박미순 위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안건상정을 통
(한길석)	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며, 오늘 안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학술연구트랙 비용지급에 관한 문제인데 더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위 원 :	학술연구트랙에서 1차년도 중간실적보고서, 결과보고서는 12월에 제출하고 2차년
(한상욱)	도 4월에는 연차계획서를 제출하는데 12월에 2차년도 연차계획서도 같이 제출한다면 교수님들이 더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.
위 원 :	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.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위 원 :	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.
(한상욱)	2015년도에 결과보고서를 3쪽에서 10쪽으로 늘렸습니다. 이에 따라 교수님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. 페이지 양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, 이공계는 12쪽으로 인문사회계열은 15쪽으로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.
재정기획부본부장:	교育부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사항이라서 재조정을 하려면 재협의가 필요합니다.
(최용재)	
위 원 :	의미가 있고 유용하면 100쪽이라도 쓸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의미한 일을 하는 테
(한상욱)	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인터넷 상으로 업로드 하는 방법 등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.
재정기획부본부장:	규정에 심사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결국 출력물로 실무심사가
(최용재)	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더 쉬운 방법은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.
위 원 :	재협의가 된다면 인문사회계열 결과보고서 페이지가 20페이지입니다. 다른 계열과
(고동호)	마찬가지로 15페이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
위 원 :	결과보고서 작성 시 줄간격, 폰트 등 아무런 작성 기준이 없으며, 이 결과보고서를
(조호성)	작성하는 것이 뿌듯하지 않고 쓸 데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
위 원 :	새로 생긴 학술연구트랙의 경우 주무 부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?
(이철로)	
재정기획부본부장:	산학연구처에서 하게 됩니다. 그러나 모든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과대학에서
(최용재)	실무심사를 거쳐 오는 자료에 대해 심사를 하면 됩니다.
위 원 :	산학연구처에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원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
(이철로)	됩니다.

위원장 : 우선 논점을 학술연구트랙의 지급시기, 업무분장, 결과보고서의 양 부분에 맞춰
(한길석)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위원들 : 없습니다.

위원장 : 그러면 학술연구트랙에 관련된 논의는 이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.

(한길석) 지금 세가지와 관련된 내용은 제안자께서 보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보
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

박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원 :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반영되어
(박미순)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우선 예산이 확정된 후에 조정이 가능한 기회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도록 하
(한길석) 겠습니다.

위 원 : 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은 221억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. 제가
(김학용) 알기로는 일단 대학회계직원으로 전환했을 때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대상이
아니었습니다.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 대상은 아닌 것 같으며, 추후에 검토
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원장 : 박미순 위원님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대학회계직 전환에 따른 교육·연구 및 학생
(한길석) 지도비 반영에 관한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

위원장 :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주시 바랍니다.

(한길석)

위 원 : 산학연구처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

(한상욱) 연간 200만원을 지급해주는 자기주도기본활동학술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기
주도기본활동학술비를 교연비와 합산하여 공지하거나 개별 항목으로 발표하기도 합
니다. 출장이나 회의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으로 지급을 해
주고 있습니다. 교수님들의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원하기 주는 비용인데 증
빙서류가 굉장히 난해합니다.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처럼 보고서를 내거나, 간소화
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원 : 이 비용도 연구비이기 때문에 한국연구재단에서 감사를 받습니다. 따라서 한국연구재
(이철로) 단의 규정을 따라야 되므로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.

위 원 : 재원은 산단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, 산단에서 본부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
(한상욱) 법으로 예를 들면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처럼 교수님들에게 연구활동비를 지원해
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하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
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

위 원 : 좋은 말씀입니다. 자기주도기본활동학술비를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포함시켜
(이철로) 서 지급하면 좋겠으나, 산단에서 대학회계로 전출하는 비용은 대용자금, 공공요금

이 두가지 밖에 전출이 되지 않습니다. 기회가 생기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

위 원 :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.

(고동호) 교육영역을 보면 신입생, 재학생, 졸업생 특강의 경우 졸업생에게 교육을 하
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학생지도의 특강 및 세미나의 경우
본연의 업무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것에 대해 논
의가 되었는지요?

재정학부본부장: 여기서 말한 특강은 정규 수업이 아니라 수업 과정과는 별개의 특강입니다.

(최용재)

위 원 : 네 알겠습니다.

(고동호)

위원장 :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?

(한길석)

위원들 : 없습니다.

위원장 : 오늘의 안건인 2018학년도 교육·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기준안에 대하여

(한길석) 현재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학술연구트랙 중 지급시기 조정, 연구
결과보고서, 업무분장 내용까지 다루었습니다.

위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을 할 것인지,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가
결을 할 것인지 성안을 해주시고 나온 성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.

위 원 : 원안대로 하되 연구학술트랙 중 다루었던 사항들을 실무진들에게 위임하여
(고동호)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위 원 : 실무부서에 위임하는 내용을 학술연구트랙에서 지급시기를 매월로 지급하는
(한상욱) 부분과 중간실적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기성금을 1,2월로 나누어서
지급하는 부분, 결과보고서의 쪽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원안을 성안합
니다.

위원장 : 그러면 원안을 가결하되 연구학술트랙 중 지급시기, 연구결과보고 내용 재검토는
(한길석) 실무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원들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?

위원들 : 재청합니다.

위원장 : 학술연구트랙에 관하여 다른 안이 있으십니까?

(한길석)

위원들 : 없습니다.

위원장 :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거 같습니다.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

(한길석) 결하고, 동의하여 주신다면 거수로 찬·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

위원들 :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한길석)

위원들 : (전원 거수)

위원장 :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(한길석) (의사봉 3타)

위원장 :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사항 협의로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

(한길석)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(間)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.

간(間)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로 2017회계연도 제6회 재정위원회 시에는 한상욱, 장환석, 박진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. 간(間)서명하실 대표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위원 : 이번에도 동일하게 세분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(고동호)

위원장 :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?

(한길석)

위원들 : 없습니다.

위원장 : 회의록 간서명 위원으로 한상욱, 장환석, 박진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

(한길석) 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. (의사봉 3타)

작성일 : 2018. 4. 23.(월)

위 원 장 :

한 길 석



간 사 :

권 진 철



기 록 자 :

강 현 창

